KiRi Weekly 2013.2.4
금융보험 해설

퇴직연금의 이해 3: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

오병국 연구원

■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[1]에서는 회사가 확정급여형(DB: Defined Benefit)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- 근퇴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의 설정, 가입기간, 급여수준, 급여 지급능력 확보,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, 운용현황의 통지 등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.

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.

-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  - 퇴직연금사업자 선정, 가입자, 가입기간, 급여수준, 급여 지급능력 확보,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
  -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·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에 이전에 관한 사항, 운용현황의 통지
  -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
  - 퇴직연금제도의 폐지·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이상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.

■ 이밖에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.

- (가입기간)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, 당해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.
  - 다만,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함.

1) 이하 '근퇴법'으로 통칭함.

- (급여수준)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.
- (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)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책임준비금의 60% 이상을 기반으로 산출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.
  - 기준책임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산정함.
    -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
    -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
  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.
- (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)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종류는 연금 혹은 일시금[2]으로 하며,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음.
  -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.
  -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.
- (운용현황의 통지)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함.

2)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,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함.